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 집 : 문화공보관 조 용 하

전 화 7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75-5444

제 635 호

1978.1.19

시 보

차 례

◎ 조 례

- 제 1212 호 : 서울특별시 상이용사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3
- 제 1213 호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소속 지방공무
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 3
- 제 1214 호 : 서울특별시립근로자 후생시설 설치조례 4
- 제 1215 호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위원 변상조례중
개정조례..... 6

◎ 규 칙

- 제 1661 호 : 서울특별시 경찰서 조직규칙중 개정
규칙..... 6
- 제 1662 호 : 서울특별시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 6
- 제 1663 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개정규칙 7
(이면 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훈 령

제 480 호 :	서울특별시 고용원 인사관리 규정중 개정규정 ...	30
-----------	-----------------------------	----

◎ 고 시

제 19 호 :	도시계획사업 (특수녹지대건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31
제 20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33
제 21 호 :	비료생산업 허가.....	33
제 22 호 :	도시계획사업 (복개공사, 도로확장) 시행허가.....	34
제 23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34
제 24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지적승인.....	35
제 25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허가.....	35

◎ 공 고

제 10 호 :	토지수용협의 공고.....	36
제 13 호 :	청계천 7 가구역 제 3, 5 지구외 4 개 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서류 공람공고.....	36
제 14 호 :	의료보호의원 지정 및 취소	
제 15 호 :	1978 년도 공무원 포스터현상모집 공고.....	39
제 16 호 :	환지계획 변경인가 및 환지에정지 지정공고.....	42
제 17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 및 환지에정지 지정공고	42
제 18 호 :	공인신조 사용승인 공고	43
제 6 호 (용산구공고) :	공인신조 공고.....	44

◎ 정 정

조 레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상이용사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㉔

1978. 1.19

◎서울특별시조례제 1212호

서울특별시 상이용사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상이용사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중 "1977년"을 "197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소속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1978. 1.24

서울특별시 교육감 이 창 갑 ㉔

◎서울특별시조례제 1213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소속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지급액)에 다음과 같이 단서 규정을 신설한다.

다만, 영 제8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의무직 공무원의 조정수당 지급액은 별표 2와같이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의무직 공무원조정수당지급구분

구 분	3급갑류	3급을류
월 수 당 지 급 액	225,000 원	200,000 원

부 칙

이 조례는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후생시설 설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인)

1978. 1. 19

◎ 서울특별시조례 제 1214호

서울특별시립 근로자
후생시설 설치조례

서울특별시립 근로복지관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설치)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22 조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근로자 후생시설을 둔다.

제 2 조 (명칭 및 운영구분) (1) 근로자후생시설의 명칭 및 운영주체는 별표 1 과 같다.

(2) 근로자 후생시설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 3 조 (직무) 근로자 후생시설은 다음 사항을 관장 한다.

1. 근로자 후생시설 운영
2. 근로자 후생시설 이용자에 대한 직업 소개 및 제도
3. 근로자 후생시설 이용자의 복지 증진

제 4 조 (직영시설의 공무원 정원)

(1) 직영시설에 관장 1 인을 두고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2) 직영시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별표 2 와 같다.

제 5 조 (이용자격 및 기간) 근로자 후생시설 이용자격과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조 (사용료) 후생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 7 조 (위탁경영 제한) 수탁경영자가 다음 각호 1 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취소, 제한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본 조례 및 규칙을 위반했을 때

2. 사용료를 체납했을 때

3.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

제 8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회관 설

치조례, 서울특별시립 근로자복지관 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립 부녀복지관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수탁경영 사용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근로자 후생 시설	
시	위
직	탁
영	경
서울특별시립 제 1 근로자회관	서울특별시립 남부근로복지관
" 제 2 근로자회관	" 봉산 "
" 제 3 근로자회관	" 중구 "
" 제 1 부녀복지관	" 동대문 "
" 제 2 부녀복지관	" 공단 "

별표 2. 공무원 정원

직 급	근로자회관		부녀복지관	
	정원	정원 내 용	정원	정원 내 용
3 급 을류	-	-	2	행정 2
4 급 갑류	3	행정 3	2	행정 2
4 급 을류	3	행정 3	-	-
5 급 갑류	1	행정 1	2	행정 2
5 급 을류	5	행정 5	-	-
고 용 원	18	(난방공 2 . 기계공 2 수위 3 . 목공 2 . 이봉사 6 . 경비 1 청부 3)	23	(난방공 3 . 수위 3 . 미봉사 2 . 보모 6 . 사감 4 . 경비 1 . 대장정리 1 . 청부 2 . 취사원 1)
합 계	30		29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
시교육위원회 위원 변상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8. 1.2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이 창 갑 ㉠

◎서울특별시조례제 1215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
원 변상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위원변상 조
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일 비) 중 일비 "10,000원"
을 "2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
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경찰서 조직 규칙중 개
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

1978. 1.19

◎서울특별시규칙제 1661호

서울특별시 경찰서 조직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경찰서 조직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안과, 보안계 분장사무중
"12"호를 삭제하고 보안과 의근계
에 "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고물상, 전당포 허가 및 지도 단속
부 칙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

1978. 1.19

◎서울특별시규칙제 1662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9 조 (보안과) 제 2 항제 1 호중
"바"목을 삭제하고 동조 동항
제 2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고물상 및 전당포 지도단속

부 칙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8년 1월 19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663 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같은 분야의 농림직이 농촌 지도직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7조 제 1항중 “제 26조에 규정된 특수직급에 대한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4에 의한 “을” 임용권자는 별표 4에 규정된 특수직급에 대한”으로 한다.

제 27조 제 2항중 “제 24조 및 제 25조의 “불” 제 24조 내지 제 26조의 “로 하고 “응시 학력”을 “응시 자격”으로 하여 “4급이하공무원

다음에 “및 6등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을 삽입한다.

제 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8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1) 공개 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 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자는 응시원서 (별지 제 8 호서식) 1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 2 차 시험에 합격하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제 3 차 시험 (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 2 차시험) 응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5조 제 2항 본문중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제 17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 시험에 있어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구분은 별표 4의 3과 같다.

제 35조중 제 4항 내지 제 6항을 각각 제 5항 내지 제 7항으로 하고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제 17조 제 1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산업대학 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전 5년 이내에 졸업한 자로써 소정의 실무수습을 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각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학과별 임용 예정급류는 별표 4의 4와 같다.

종전의 제 35 조 제 4 항중 “이 경우 임용급류는 “다음에” 대학교 4 년 졸업자는 4 급을류 또는 기능직 7 등급”을 삽입한다. 종전의 제 35 조 제 6 항중 “제 5 항의 소요경력”을 “제 6 항의 소요경력”으로 한다. 제 43 조중 제 2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시험요구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93 조 제 1 항중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다음에 “정부의”를 삽입하고,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시, 도 표창조례”로 한다. 제 93 조 제 1 항 제 1 호중 “훈장, 포상” 다음에 “정부의”를 삽입한다. 제 93 조 제 1 항에 제 6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장, 군수, 구청장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한한다) 표창 0.3 점 제 95 조 제 1 항중 “새마을지도과 (구, 읍장소의 경우 새마을지도계)”를 “새마을지도과, 새마을사업과 (구 읍장소의 경우 새마을과) 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으로 하고 동조 제 2 항중 “이수한자에 대하여는”을 “이수한 자가 3 급을류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하여는”으로 한다. (별표 2) 각종 시험요구서의 구비서류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특수직급 특별임용시험 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의 2) 특별임용시험,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특전이 부여되는 자격증 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의 3)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의 4) 전공학과별 임용예정직급 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특수직급 특별임용시험, 전직시험 응시자격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응시원서 첨부서류를 삭제한다. (별표 7) 특별임용급류 상당 경력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특별임용학위 (기술사포함) 별 소요경력년수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

(별표 9)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중 순번 "1" 신규임용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해당급류표중 군인 5급을류, 기능직 9등급이 하란의 "하사이하"를 "하사"로 한다.

(별표 16) 고용원의 직종, 초급호봉의 한계와 직명의 1통 직명란중 "수의"를 "수위(장)"으로 하고 "기계공" 다음에 "수도기수"를 삽입하며, "통신수" 다음에 "물리치료사, 특수교사"를 추가 한다.

(별표 18) 평정자와 확인자(4을이하)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의 2) 평정자와 확인자(4갑이상)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 5호서식) 중 임용예정란의 "직명"을 "직위"로 한다.

(별지제 31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3급을류)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 32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연구직)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 33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4급이하)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제 34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기능직)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별지제 31호 내지 제 34호서식은 4급갑류 및 3급을류 공무원은 197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고 4급을류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197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각 종 시험 요구서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	공개경쟁 승진 시험	특별임 용시험	특별승 진시험	전직 시험	비고
1	시험요구서 1부			○	○	○	별지 9 호서식
2	인사기록 카드 또는 이력서 1 통			○			
3	인사기록 카드 요약서 1 통				○	○	별지 37 호서식
4	정·현원 표 1 통			○	○	○	
5	승진 순위표 1 통				○		
6	특별임용사유서 1 통			○			
7	전직 예정직에 관련 있는 직무기술서 1 통					○	
8	경력증명서			○			
9	재직증명서		○				
10	최종 학력 증명서			○			
11	주민등록초본	○		○			병역을 필한 남자에 한함.
12	신원증명서 1 통			○			시, 구, 읍, 면장 발행
13	병적확인서	○		○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남자에 한함.
14	채용신제 검사서	○		○			국공립 종합병원 장 발행
15	전역예정증명서	○		○			현역군인에 한함
16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 통			○	○	○	해당자에 한함

구분	구 비 서 류 의 종 류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 험	공개경쟁 승진 시험	특별임용 시 험	특별승진 시 험	전직시험	비 고
17	원호대상자증명서 1 통 (군사원호대상자 임용 법 제 2 조 제 2 호 내 지 제 4 호 해당자와 국가 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의 적용대상 자인 경우에 한함)	○		○			해당자에 한함.
18	주산능력검정 합격증 1 통 (문교부장관과 기타 주산능력검정기관 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 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			해당자에 한함.
19	문교부장관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 증 노동청장발행 기타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 는 검정기관 (한글타 자의 경우에는 한글 표준자판에 의하여서만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 는 검정기관에 한함) 그 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 는 주무부장관이 지정 한 기관 발행)	○		○			해당자에 한함.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응시자는 본표에 규정된 해당서류를 제 3 차 시험 응시시에 제출한다.							

(별표 3)

특수직급에 대한 특별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필요한 학력 구분표

구분		4 급 이 상	5 급
직 별	기계분야	기계공학을 이수한 자	공업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전기분야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물리학을 이수한 자	
	섬유분야	섬유공학을 이수한 자	
	화학분야	화학공학, 응용공학 또는 화학을 이수한 자	
	야금분야	금속공학 또는 야금학을 이수한 자	
	공업경영	공업경영학을 이수한 자	
농 촌 지 도		농업계통의 학과를 이수한 자	농업계통의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농업연구	농업분야	농업계통의 학과를 이수한 자 농학 또는 생물학을 이수한 자	농업계통의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농업경영분야	농업경영학 또는 농업경제학을 이수한 자	
	임업분야	임학 또는 생물학을 이수한 자	
	잠업분야	잠사학 또는 생물학을 이수한 자	
	축산분야	축산학 또는 동물학을 이수한 자	
	가축위생분야	축산학, 동물학 또는 수의학을 이수한 자	
	농공분야	농업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또는 토목공학을 이수한 자	
보건연구	화학분야	의학 또는 생물학을 이수한 자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공중보건	의학, 치의학, 약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분 야	수의학, 축산학, 동물학, 방사선학 또는 위생공학을 이수한 자	
	약학분야	약학, 생물학 또는 화학을 이수한 자	

1. 표중 3 급이상의 응시학력은 4
년제대학및 교육법에 의한 4 년제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제 3
학년 수료자및 수료예정자(제 3 학
년의 제 1 학기까지의 소정의 학점
을 취득하고 제 3 학년 제 2 학기의
등록을 마친자를 포함한다)와 법
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2. 윗표중 4 급의 응시학력은 초급

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교육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졸업자및 동 졸업예정자(최종학년
의 제 1 학기까지의 과정을 마치고
제 2 학기의 등록을 마친 자를 포함
한다) 4 년제대학 제 2 학년 수료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한다.
3. 위의 1 및 2 의 학력은 소속장관
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별표 4 의 2)

특별임용시험, 전직시험의응시자격및특전이부여되는자격증구분표

직렬 구분		3 급 이 상	4 급	5 급
기 계	기계분야	기계기술사(건설기 계) [건설기술자 갑류(기계)]	건설기계사 1 급 (건설 기술자을류(기계) 열관리사 1 급 일반기계기사 1 급 소방설비기사(기계분 야) 1 급	건설기계사 2 급 (건설 기술자병류(기계) 열관리 기능사 2 급 일반기계기사 2 급 소방설비기사(기계분 야) 2 급영사기사면허
	자동차 정비분야		자동차정비기사 2 급 (1 급자동차정비사) 자동차정비기능사 1 급 (2 급자동차정비 사) 자동차점사기사 1 급	자동차정비 기능사 2 급 (3 급자동차정비사) 자동차점사기사 2 급

구 분 직 렬		3 급 이 상	4 급	5 급
전기	중기분야 계량분야		계량기사 1급 (1급계량사) 기계기사 2급 (2급계량사)	중기조정사면허 계량기능사 2급 (3급계량사)
	전기분야	전기기사 1급 (전기 주임기술자 1급) 전 기공사기사 1급 (전 기기술자 갑류)	전기기사 2급 (전기 주임기술자 2급) 전기 공사기사 2급 (전기 기술자 을류) 전기공사기사 1급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1급	전기기사 2급 (전기주 임기술자 3급) 전기공 사 기능사 2급 (전기기술자 병류) 전기공사기능사 2급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2급
	원 자 력 분 야	방사선회급감독자, 방사성 동위원소취급 자 (특수 또는 일반) 원자로조종사, 원자 로조종 감독자	방사선회급감독자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특수 또는 일반) 원자로조종사, 원자로 조종감독자	
공업 연구	기계분야	기계기술사 (기술사 기계부문)	기계기술사 (기술사 (기계부문)) 품질관리기사 1급 (품질관리사)	품질관리사 1급 (품질관리사)
	전기분야	기계기술사 (기술사 (전기부문))	전기기술사 (기술사 (전기부문)) 품질관리기사 1급 (품질관리사)	품질관리기사 1급 (품질관리사)

구 분		3 급 이 상	4 급	5 급
직 렬	공업 연구	섬유기술사 (기술사 (섬유부문))	섬유기술사 (기술사 (섬유부문)) 품질관리기사 1 급 (품질관리사)	품질관리기사 1 급 (품질관리기사)
	화공분야	화공기술사 또는 산 업응용기술사 (요업) (기술사 (화학부문))	화공기술사 또는 신 업응용기술사 (요업) (기술사 (화학부문)) 품질관리기사 1 급 (품질관리사) 소방시설기사 (화공 분야) 1 급 화학품질관리기사 1 급 위험물취급기능장	품질관리기사 1 급 (품질관리사) 소방시설기사 (화공 분야) 2 급 화약품질관리기사 2 급 위험물취급기능사 2 급
	금속분야	금속기술사 (기술사 (금속부문))	금속기술사 (기술사 (금속부문)) 품질관리기사 1 급 (품질관리기사)	품질관리기사 1 급 (품질관리사)
광무	채광		광산보안기사 1 급 황산기사 1 급	광산보안기능사 2 급 광산기계기능사 2 급
농촌 지도 농업 연구	농업분야	산업응용기술사 (농예화학) 기술사 (농업부문 : 농화학) 산업응용기술사 (식품제조가공)	산업응용기술사 (농예화학) (기술사 (농업부문 : 농화학)) 산업응용기술사 (식품제조가공)	

구 분		3 급 이 상	4 급	5 급
직 렬				
		(기술사 (농업부분 : (식품 가공)) 기술사 (농업부분 : 작물) 기술사 (농업부분 : 식물방역)	(기술사 (농업부분 : (식품 가공)) 기술사 (농업부분 : 작물) 기술사 (농업부분 : 식물방역)	
농업 연구 농촌 지도	잠업분야	섬유기술사 (생사 (기 술사 : 농업부분 : (잠 사))	섬유기술사 (생사 (기 술사 : 농업부분 : (잠 사))	
농업연구 농촌지도	축산분야	기술사 (농업부분 : 축산)	기술사 (농업부분 : 축산)	
농업 연구	가축위생 분 야	수의사	수의사	수의사
보건	보 건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위생시험사,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 위 생사, 영양사, 방사 원소취급자 (특수 도는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치료사, 치 과기공사, 치과위생 사, 위생시험사, 위 생사, 영양사, 방사 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도는 일반) 방사선취급감독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치료사, 치 과기공사, 치과위생 사, 위생시험사, 위 생사, 영양사, 방사 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도는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구 분 직 별		3 급 이 상	4 급	5 급
	공해분야		공해관리기사 1 급	공해관리기사
보 건 연 구	화 학분 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공중보건 분 야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치과의사, 임 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 사, 치과위생사, 위생 시험사, 위생사, 간호 원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간호원 공해관리기사 1 급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치과의사, 임 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 사, 치과위생사, 위생 시험사, 위생사, 영양 사, 간호원, 간호보 조원 공해관리기사 2 급
	약학분야	약사	약사	약사
토 목	일반토목 분 야	토목기술사 (시공) (건설기술자등급(토 목)) 측지기사 1 급 (1 급측량기사)	토목기사 1 급 (건설기술자등급 (토목)) 측지기사 2 급 (2 급측량사)	토목기사 2 급 (건설기술자 등급 (토목)) 측지기사 2 급 (2 급측량사) 토목제도기능사 2 급
	수도업무 분 야		제량기사 1 급 (1 급제량사) 개량기사 2 급 (2 급제량사)	제량기능사 2 급 (3 급제량사)

직 별		3 급 이 상	4 급	5 급
전 축		1 급전축사, 건축기술사 (건축시공) (건설기술자감류 (건축))	2 급전축사, 건축시공기사 1 급 (건설기술자음류 (건축)) 건축제도기능사 1 급	2 급전축사, 건축시공기사 2 급 (건설기술사병류 (건축)) 건축제도기능사 2 급
측 지		측지기사 1 급 (1 급측량사)	측지기사 2 급 (2 급측량사)	측지기사 2 급 (2 급측량사)
통신사	유 선 통 신 분 야		인쇄통신기능사 2 급 (인쇄급유선통신사) 음향통신기능사 2 급 (음향급유선통신사)	인쇄통신기능사 2 급 (인쇄급유선통신사) 음향통신기능사 2 급 (음향급유선통신사)
	무 선 통 신 분 야	전파통신기사 1 급 (제 1 급무선통신사)	전파통신기사 2 급 (제 2 급무선통신사)	전파통신기능사 2 급 (제 3 급무선통신사) 특수급무선통신사
통신기술	통신기계분야 통신선로분야	유선설비기사 1 급 또는 2 급 (1 급 또는 2 급 유선기술사)	유선설비기사 2 급 (2 급유선기술사)	유선설비기능사 2 급 (3 급유선기술사)
전송기술	반송기술분야	유선기술사)		
전송기술	무 선 기 술 분 야	무선설비기사 1 급 또는 2 급 (제 1 급무선 기술사 또는 제 2 급 무선기술사)	무선설비기사 2 급 (제 2 급무선기술사)	무선설비기능사 2 급 (제 3 급무선기술사) 제 1, 2, 3 급 아파추 어무선기사 특수급 무선기사
비 고 :		유효표중 () 속의 자격증 명칭은 국가기술자격 법시행이전의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증 명칭임.		

(별표 4 의 3)

기능직 공무원 특별 임용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

구분 직 별	7 등 급 이 상	8 등 급 이 하
토목분야	토목기사 1 급 (건설기술사 올류 (토목)) 토목제도 기능사 1 급 측척기사 2 급 제량기사 1 급 (1 급제량사) 제량기사 2 급 (2 급제량사)	토목기사 2 급 (건설기술사 병류 (토목)) 토목제도기능사 2 급 측척기사 2 급 제량기능사 2 급 (3 급제량사)
건축분야	2 급건축사, 건축시공기사 1 급 (건설기술사 올류 (건축)) 건축제도기능사 1 급	2 급건축기사, 건축시공기사 2 급 (건설기술사 병류 (건축)) 건축제도기능사 2 급
통신전화 수리 분야	인쇄통신기능사 2 급 (인쇄급유선통신사) 음향통신기능사 2 급 (음향급유선통신사) 전파통신기사 2 급 (제 2 급무선통신사) 유선설비기사 2 급 (2 급유선기술사) 무선설비기사 2 급 (제 2 급무선기술사)	인쇄통신기능사 2 급 (인쇄급유선통신사) 음향통신기능사 2 급 (음향급유선통신사) 전파통신기능사 2 급 (제 3 급무선통신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유선설비기능사 2 급 (3 급유선기술사) 무선설비기능사 2 급 (제 3 급무선기술사) 제 1, 2, 3 급 아무추어 무선기사, 특수급무선기사, 병중선박통신사

구분 직렬	7 등 급 이 상	8 등 급 이 하
전기분야	전기기사 2 급 (전기수임기술자 2 급) 전기공사기사 2 급 (전기기술자 올류) 전기공사기능사 1 급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 급	전기기사 2 급 (전기기술자 3 급) 전기공사기능사 2 급 (전기기술자 병류)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2 급
기계분야	건설기계사 1 급 (전기기술자올류 (기계)) 자동차정비기사 2 급 (1 급자동차정비사) 자동차정비기능사 1 급 (2 급자동차정비사) 제량기사 1 급 (1 급제량사) 제량기사 2 급 (2 급제량사) 열관리사 1 급 일반기계기사 1 급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 급 원동기점사기사 1 급 원동기취급기능사 1 급 원동기시공기능사 1 급 자동차점사 1 급	건설기계기사 2 급 (건설기술자 병류 (기계)) 자동차정비기능사 2 급 (3 급자동차정비사) 중기조정사면허 개량기능사 2 급 (3 급제량사) 열관리기능사 2 급 일반기계기사 2 급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2 급 영사기사면허 원동기취급기능사 2 급 원동기시공기능사 2 급 자동차점사 2 급
선박분야	을중선장, 어선을중선장, 을중 1 등항해사 어선을중 1 등항해사 각중 2 등항해사 을중기관장, 을중 1 등기관장, 을 중선박통신사, 갑중 2 등기관사	을중 2 등항해사, 어선을중 3 등항해 사, 병중항해사 소형선박항해사 을중 2 등기관사, 병중기관사, 소형 선박기관사, 병중선박통신사

(별표 4 의 4)

서울산업대학출업자특별임용예정직급및전공학과구분표

임 용 예 정		전 공 학 과
직 렌	직 급	
행 정 직	지 방행정주사보	도시 행정과, 행정학과, 산업경영학과
화 공 직	지 방화공기사보	화학공학과
농 립 직	지 방농림기사보	조경학과
토 목 직	지 방토목기사보	토목공학과, 위생공학과
건 축 직	지 방건축기사보	건축공학과

(별표 5)

특수직급신규 임용시험, 전직시험 응시자격구분표

직 렌	3 급 이 상	4 급	5 급
사 서	사서학을 이수한 자		인문계고등학교이상 졸업자
수 의	수의 생리학을 이수한자		수의 생리학을 이수한자
약 무	약학을 이수한 자		초급대학이상에서 약 또는 생물학을 이수한 자
간 호	초급대학이상간호학을 이수한 자		간호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선 박	항해학, 선박기관학을 이수한 자		해양고등학교 선박 또는 항해과를 이수한자
지 적	지적측량학, 제도학을 이수한 자		공업또는 농업계통의 고등학교 이상의 토목학과를 졸업한자

- 비고: 1. 원표중 3 급이상의 응시학력은 4년제대학 및 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제3학년수료자 및 수료예정자(제3학년의제1학기까지의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제3학년에2학기의 등록을 마친자를 포함한다)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이어야 한다.
2. 원표중 4 급의 응시학력은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교육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졸업자 및 동졸업예정자(최종학년의제1학기까지의 과정을 마치고, 제2학기의 등록을 마친자를 포함한다) 4년제대학제2학년 수료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3. 위의 1 및 2의 학력은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별표 7)

특별임용급류상당경력기준

임용예정급류 직무분야		2 급 갑 류	2 급 을 류	3 급 갑 류	3 급 을 류	4 급갑 류기능 직 6 등 급 이상	4급을류 기능직 7 등급	5 급갑 류기능 직 8 등 급	5 급을 류기능 직 9 등 급
경찰공무원		치안총 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소방총경 소방경정	경감	경위	경사 소방사	경정 순경
군인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상사 중사	하사
교육공 무원 (사 립학교 교원포 함)	대학 (초 급대학 전문학교 포함)	교수 (3년 이상)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고 등학교및 기타교육 공무원			9 호봉 이상 (6 호봉 이상)	16 호봉 이상 (9 호봉 이상)	20 호봉 이상 (11 호 봉이상)	24 호봉 이상 (11 호 봉이상)	29 호 봉이상 (15 호 봉이상)	30 호봉 이하
관사, 검사		4 호봉 이상	3 호봉 이상	9 호봉 이상					
기능직, 교직원						기능직 6 등급 이상	기능직 7 등급	기능직 8 등급	기능직 9 등급 교직원
정부투자기관		이사	이사	부장	과장 (차장)	계장 (대리)	평의원 (3년 이상)	평의원	평의원

비고 : 1. 원표에 기재된 당해급류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 경력의 령

제17 조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상이어야 한다.

2. 교육공무원중 괄호안에 표시된 호봉은 교육공무원보수규정제 4 조 제

(별표 8)

특별임용 학위 (기술사 포함) 별 소요경력년수표

급 류	구 분	박 사	석 사	기 술 사
2	급	8		5
3	급	5		2
3	급		2	

비고 : 윗표의 소요경력년수에는 제 35 조 제 3 항 제 2 호의 경력년수를 포함한다.

(별표 9)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순번	발령구분	구 비 서 류	비 고
1	신규임용	인사기록카드 1 통 호적초본 2 통 신원증명서 1 통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1 통 최종학력증명서 1 통 경력증명서 1 통 채용신체검사서 1 통 신원조사회보서 1 통 민간인신원진술서 4 통 (별지제 52 호서식) 사진 (명함판, 상반신탈모) 3 매	편제사유가 기재된것 (1 통은 신원조사의뢰용) 시, 구, 읍, 면장발행 병정증명서는 제 1 국민역및 실역 보충역에 한함 시립종합병원 장발행 중앙정보부장 (3 급갑류이상) 또는 내무부장관 (3 급을류 이하) 발행

(별표 18)

평정자와확인자(4을이하)

구 분 기 관 별	피 평 정 자	평 정 자	확 인 자
1. 본 청	4 을이하	제 장	실 과 장
2. 구 청	/	실 과 장	국 장
3. 출 장 소	/	과 장	소 장
4. 동	/	동 장	구청출장소총무과장
5. 공무원교육원, 문화회관 종합운동장건설본부, 지 하철본부, 강남병원	/	과장 또는 부장	원 장 관 장 본 부 장
6. 농촌지도소	/	계장 또는 지소장	소 장
7. 노동위원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사 회 과 장
8. 수원지사사무소, 수도권미 사업소	/	계 장	소 장
9. 3 갑이상을 장으로 하 는 사업소	/	과 장	원 장 소 장
10. 3 을 이하를 장으로 하는 사업소	/	소 장	본 청 주 관 과 장

※ 확인자별로 당해직급의 피평정자가 1명일 경우에는 이를 따로 수합하여 위표의 확인자가 평정자가 되고 내무국장이 확인자가 된다.

(별표 18 의 2)

평정자와 확인자 (4 갑 이상)

구 분 기관별	피평정 자	평 정 자	확 인 자	평 정 단 위
1. 본 청	4 갑, 3 을	실과장	국 장	1. 국산하에 2 이상 사업소가 있을 때 본청과 사업소 구분 평정한다. (본청, 사업소 구분 분포비율 적용) 2. 보사국산하 사업소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병원 - 각병원합산 분포비율 적용평정 ○ 보건소 - 각보건소 합산분포비율적용 평정 ○ 기타사립소 - 각사업소 합산분포비율적용 평정 3. 확인자별로 당해 직급의 피평정자가 1명일 경우 이를 따로 수합분포비율 적용 내무국장이 확인자가 된다.
2. 구	4 갑, 3 을	국 장	구청장	
3. 출장소	4 갑 3 갑	과 장 소 장	소 장 내무국장	
4. 동	4 갑	구청무과장	총무국장	
5. 공무원교육원, 문화회관 종합운동장건설본부, 지하철본부, 강남병원	4 갑, 3 을	과장 또는 부장	원장, 관장 본부장	
6. 농촌지도소	4 갑 3 을	소 장 농축과장	산업국장 산업국장	
7. 노동위원회 사무국	4 갑, 3 을	사회과장	보건사회국장	
8. 5 갑이상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	4 갑, 3 을	원장 또는 소장	주관국장	
9. 3 을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	4 갑 3 을	소 장 주관과장	주관국장 주관국장	
10. 4 갑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	4 갑	주관과장	주관국장	

(별지 제 31 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3 급을류)

1. 소 속

국
담당 관실

과

3. 평정기간

19 . . .

4. 분포비율

.부터 .까지

수 (37 점) 이 상 1
우 (29 점) ~ 36 점 3
양 (16 점) ~ 28 점 5
가 (15 점) 이 하 1

2. 직 급 : ()

※ 부하직원의 근무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받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함것.

평정요소및 평정배점	평정 기준	평정 자 확인 자 표시	근무 실적 (8)				근무 수행 능력 (6)				근무 수행 태도 (6)				위원장 성명										
			직무의 양 (4)		직무의 질 (4)		지식 및 기술 (2)		통솔력 (2)		적성 판단 (2)		책임성 (2)		주 동 성 태도 (2)		근무 상황 (2)	2. 확인자 직위 성명							
			담당 직무를 시간내 처리 하였는가?		담당 직무를 수행에 있어 어느 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 는가?		담당 직무를 수행에 필요 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가?		담당 직무를 수행에 있어 정확한 이 해와 통솔 력을 갖고 있는가?		상위직 선 에 적성을 갖고 있는 가?		직무 수행 에 적극적 임을 갖고 있는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 익을 옹호 하고 공적 을 세우려 하고 있는 가?		담당 직무를 수행함에 충실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기려하고 있는가?	3. 평정자 직위 성명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평정 자 총 점	총 점	조 정 점	순 위			
			4	3	2	1	4	3	2	1	2	1	1	0	2	1	1	0					2	1	1

45-26

제 635 호

나

보

1978.1.19

근무성적평정표(4급이하)

1. 소 속 국
2. 직 명 : (담당관실)

과	3. 평정기간	4. 분포비율
	19 . .	.부터
	19 . .	.까지

수	(37 점	이 상)	 1	한
우	(29 점	~ 36 점)	 3	한
양	(16 점	~ 28 점)	 5	한
가	(15 점	이 하)	 1	한

※ 부하직원의 근무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받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것.

1. 조정자

위원장

성명

2. 확인자

직위

성명

3. 평정자

직위

성명

[illegible]

45-29

1978.1.19

보

시

제 635 호

(제 34 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기능직)

1. 소속 국 과
담당관실

3. 평정기간
1월 부터
1월 까지

4. 분포비율

수 (37 점 이상) 1
우 (29 점 ~ 36 점) 3
양 (16 점 ~ 28 점) 5
가 (15 점 이하) 1

※ 부하직원의 근무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받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할것.

평정요소및 평정배점 평정등급및점수 평정자 평정자성명	근무성적 (8)				근무수행능력 (6)				근무수행태도 (6)				1. 조정자																			
	직무의양 (4)		직무의질 (4)		지식기능 (4)		이행능력 (2)		책임성 (2)		민중주성 (2)		근무상황 (2)		위원장 성명 (인)																	
	담당직무를 기간내에 얼마나 처 리하였는가 ?		담당직무수 행에 있어 어느정도 우수하게 처리하였는 가?		담당직무수 행에 필요 한 지식과 기능을 갖 고 있는가 ?		담당직무에 관한 정확 한 이해의 상위적 승 진의 의적 성을 갖추 고 있는가 ?		직무수행에 있어 책임 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가 ?		직무수행상 과제에 대한 민중의 이해 와 협조로 이로써 공 공처리하는 가?		담당직무에 충실하며 충실한 근무 상황은 우 량한가?		2. 확인자 직위 성명 (인)																	
															3. 평정자 직위 성명 (인)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수	우	양	가	평정자 확인자 총 점	종 점	조 점	순 위
	4	3	2	1	4	3	2	1	2	1	1	0	2	1	1	0	2	1	1	0	2	1	1	0	2	1	1	0				
	0	2	0	0	0	0	0	0	0	5	0	5	0	5	0	5	0	5	0	5	0	5	0	5	0	5	0	5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훈 령

서울특별시고용원 인사관리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78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㉞ 서울특별시훈령제 480 호

서울특별시 고용원 인사관리
규정중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 고용원 인사관리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고용원 (잡급직원 포함)
채용자격기준표중 기사 측정분야의
「자격구분」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매표원」과 「수로원」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의사」란 다음
에 「물리치료사」 및 「특수교사」
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
행 한다.

(별표 1)

고용원 (잡급직원 포함) 채용자격기준표

직 종	분 야	자 격 구 분
기 사	공해측정분야	1. 대학교 (화공, 토목, 전기, 기계공학과) 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화공, 토목, 전기, 기계공학과) 이 상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경력 2년이상인자 3. 공해관리 기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매 표 원	유료도로분야 기 타 분 야	1. 국민학교 이상 졸업자 2. 동종 경력 및 일반사무 경력 1년이상인자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2. 중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당해분야 경력 및 일반사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수 료 원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물리치료사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특수교사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 호

도시계획사업 (특수녹지대 건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9 호 (76.3.24) 로 시설결정되고 동 고시제 190 호 (76.8.12) 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특수녹지대 건설사업의 일부를 변경 인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산업국 도시가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78.1.24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시행의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산 53-1 의 98번지

나.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도시계획사업, 특수녹지대

다. 사업규모 : 1) 입지 : 363,894 M^2
2) 1차조성범위 : 225,077 M^2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장

마. 착수 및 준공예정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착	공	75.8.15		76.8.25			
준	공	77.8.31		78.8.31			
바. 사공 또는 수공할 재산의 표시 : 별첨토지조서				토지수공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조서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의							

토지세목 및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조서

77.12.20 현재

구분	원			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구분	주 소	성명	
1	마포구 성산동산 53-7	임야	5.5115	마포구 성산동산 53-12	임야	4,476 "	소유	광주시호남동 23	李 恩 庸	배입산 53-12
				" 53-7	"	2,168 "				
				" 53-13	"	2,414 "	근저당	충구중무로 1가	제일은행(주)	
				" 53-18	"	136 "		53-1		
2	성산동산 55	"	0.0300	" 55	"	90 "	소유	개성부	金 始 耆	소재불명
3	상암동산 4-15	"	0.6302	상암동산 4-187	"	60 "	"		国 (국	
				" 4-15	"	1,832 "	"		세청)	
5	" 산 4-19	"	0.1004	좌 동	"	좌 동	"		"	
6	" 산 4-24	"	1.8911	상암동산 4-192	"	508 "	"		"	
				" 4-24	"	5,173 "	"		"	
6	" 산 4-63	"	0.0118	좌 동	"	좌 동	"		吉田喜太郎	
7	" 산 4-64	"	0.0524	"	"	"	"		"	
8	" 산 4-147	"	0.0014	"	"	"	"		"	
9	" 산 4-177	"	0.0413	"	"	"	"		国 (국	
10	" 산 4-176	"	0.0406	"	"	"	"		세청)	
11	성산동 517-4	도로	20 평	"	도로	"	"		"	
以下省略										

45-32

제 635 호

지

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 20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 호 (78.1.7) 와 제 17 호 (78.1.16)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전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서울특별시 시민과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8.1.23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산 48-6 의 3 필지

2.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강서중고등학교

3. 면적 및 규모 : 4,145㎡ (1,254평)

4. 시행자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1-58 학교법인 홍신학원이사장 정희영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1978.1.23.

나. 준공예정일 : 1978.6.23

6. 위치및계획명면도 : 별첨 (도면생략)

7. 공사설계도면 : 별첨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 21 호

비료생산업 허가

비료관리법 제 11 조 및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 16 조 제 1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료생산업을 허가 하였기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 7 조 제 1 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78.1.23

서울특별시장

허가 번호	허가 년월일	성명, 주소및 제조장소재지	상호 및 상 품 명	비료의종류 및 품목	보증성분및 기타의가격	생 산 능력
1-2	1978. 1.23.	1. 명칭 및 대표 제 일제당 공업 주식회사 대표 : 경주현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98 3. 제조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 양동 92	제일제당공 업(주)대공표 유기질비료	아미노산 밤호부산 비료(박)	질소 : 10% 인산 : 10% 염분 : 10%	15,000 M/T

1. 유효기간 : 1978.1.23-1981.1.22.에제 허가권을 양도할 수 없다.

2. 허가일로부터 2년내에는 타인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2 호

도시계획사업 (복개공사, 도로확장) 시행허가

1. 건설부 고시 제 177 호 (62.12.6) 및 농 고시 제 406 호 (71.7.7) 에 따라 시설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311 호 (77.12.14) 로 도시계획사업실시에 따른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를 마친 금북천복개 및 한양대학교 - 마장동간 도로확장공사는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위임 규정사항에 따라 이를 도시계획법 제 26 조에 의거 사업실시인가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 및 시행자인 성동구청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8.1.25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시행지 : 서울특별시성동구 금호동 1가 일부.

○ 금북천복개

○ 한양대학교 - 마장동간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조서

2. 사업의종류및명칭 : 금북천복개공사

단대 - 마장동간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규모 : B = 15M L = 260M

B = 20M L = 250M

4. 사업의 시행자 : 성동구청장

5. 사업착수 준공년월일

가. 착 공 : 78. 1. 1.

나. 준 공 : 78.12.31.

-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소유권권리명세 : 별첨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8.1.26.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중로	2	41	15M	1,800M	세종로	인의동	낙원동 106 번
변경	"	"	"	"	"	"	"	지부근 65 구
								간 가각확장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45-34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지 적 승 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 호 (78.1.20) 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 위임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 조서

규정에 따라 지적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8.1.27.

서울특별시 장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중, 고등학교 (배화여자중고등학교)	종로구 필운동 12 의 76 필지	32,000 평방 (9,680 평)	

나. 도로일부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구 분	등급	류 별	번 호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정 변 경	소로	3		6	230	필운동 25-1	누상동 159-28	폐지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 호 (78.1.9) 로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을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8.1.27.

서울특별시 장

1. 사업시행지 : 중구 광학동 690 의
4 필지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도로)
3. 사업의규모및면적 : 연장 25 미터
폭 4 미터

4.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중곡 2동 149 의 5 허복만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78.1.30.
나. 준공예정일 : 78.2.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생략)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제 3 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 호

토지수용협의 공고

서울시에서는 다음 지역에 국민주택
을 건설코자 건설부로부터 사업계획에

관한 승인 (건설부고시 제 263 호 77.
12.27) 을 득하여 용지 매수 업무
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제위께
주택건설 촉진법 제 17 조의 2 및 토
지수용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에 관한 협의요청 공문을 개별
적으로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간 수소변경등의 사유로 수령치
못한분이 있어 이를 공고하오니 국
민주택건설사업에 적극 협조하시는
뜻에서 수용에 관한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사당, 봉천지구 국
민주택 건설

2. 시행기간 : 77.11.26. -
78.4.30.

3.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위 치	면 적	수용할 토지
관악구 봉천동	256 평	180 의 182 , 30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
행정과와 관악구 관재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1978.1.27.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 서울특별시 제 13 호

청계천 7 가구역 제 3 , 5 지구의
4 개지구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류 낭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104 호 (76.1.14)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64 호 (77. 3.10) 로 재개발사업 계획결정된 청계천 7 가구역 제 3 , 5 지구의 4 개지구 토지소유자로부터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재개발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람에 공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서 갈음합니다.

1978.1.28.

서울특별시장

공 랑 내 용

가. 사업시행 개요

사업명칭	시행위치	면적	시행기간	시행자	비고
청계천 7 가제 3, 5 지구 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7-39 일대	1,240.2 평	시행인가일 ~ 78.12.31	청계천 7 가제 3, 5 지구 재개발조합	
청계천 7 가제 4 지구 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7-38 일대	253.8 평	"	토지소유자 4 인 대표 조현주	
청계천 7 가제 6 지구 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04-26 일대	636.0 평	"	청계천 7 가제 6 지구 재개발조합	
청계천 7 가제 7, 8 지구 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3-20 일대	1,062.7 평	"	청계천 7 가제 7, 8 지구 재개발조합	
청계천 7 가제 9 지구 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3-34 일대	215.8 평	"	토지소유자 4 인 대표 최규영	

나. 공람서류

시행인가신청서 규약 (정관) 사업시행계획서

서울특별시 공고제 14 호

의료보호의원지정및 취소

생활보호 대상자의 진료를 담당할 의

료기관을 지정하고 일부 지정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 하였기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 7 조 및 의
료 보호에 관한 규칙 제 9 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함.

1978. 1.

서울특별시 시장 주 자 춘

1. 의료기관 신규지정

진료지구명	진료대상지역	1 차 진 료	
		의 료 기 관 명 칭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전지역성병환자	신금동비뇨기과의원	종로구창신동 439의1
	"	협동의원	충구 인동 501
	"	성화의원	동대문구청량리1동172의8
	"	성누가의원	영등포구독산동482의17
	"	세호의원	영등포구영등포동426의17
	서대문구 : 갈현동 구산동 대조동·신사동 진관외동 진관내동	일 신 의 원	서대문구갈현동 390-8
	강서구 : 천지역 (엄장동 외 15 개 동)	신옥화산부인과의원	강서구화곡동 111의 71
	강서구 : "	삼철규소아과의원	" " 24의 577

2. 의료보호 의원 지정 취소

의료기관명칭	소 재 지	개 설 자	비 고
청구의원	서대문구 대조동 187 의 1	김 학 중	폐 연

◎서울특별시제 15 호

1978 년 도 공무원포스터현상모집공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제안 제도에 관한
포스터 현상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함.

1. 포스타 종류

가. 내 용 : 공무원 제안제도에 다수
응모할수 있는 내용의 포
스타 (서울특별시공무원제
안 규칙 (77.8.17 규칙
제 1712 호) 참고)

나. 포스터규격 : 모조 4 절지

다. 자 색 : 흙 · 청 · 남 색

라. 색 채 : 3 색 이내

2. 응모자격 : 서울특별시 소속 전 공
무원 (임시직 포함)

3. 모집기간 : 1978 . 2 . 1 - 1978.2.15
(15일간)

4. 응모 및 접수

가. 제출서류

(1) 응모서 및 내용 설명서 각 1통

(2) 포스터 1매 .

나. 응모접수

(1) 포스터응모 요건을 구비한 자
는 소관 (주무과) 부서 경우 제출
할것 .

(2) 응모한 포스타 및 첨부 서
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3) 접수처 : 서울특별시 시정개발
담당관실

5. 포스터심사

가. 심사일시 :

(1) 예비심사 : 1978.2.20.

(2) 본 심 사 : 1978.2.25.

6. 시 상

가. 시상일자 : 78년 3월 예정

나. 시상내용 : 심사에 채택된 응
모자에게는 다음 상을 수여한다 .

0. 우수상 - 1 등 1명

0. 가 작 - 2 · 3 등 각 1명

다. 부 상 : 우수상 - 10만원

가 작 - 5 만 원

7. 기 타 상세한 문의는 시정개
발담당관실로 할것

(전화 75-6403) 1978년 2월 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서식 1 호			
포 스톨 현 상 원 서			
소 속		진 급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회 번 호	
별첨과 같이 포스터 현상을 제출 합니다 . 첨부 1 . 포스터 1 매 . 2 . 내용 설명서 1 매 . 끝 . 1978 년 2 월 일 제 출 자 (인)			

서식 2 호

포 스테 령 상 내 용 설 명 서

요 지

◎서울특별시공고제 16 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정
지 지정 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제 338 호 (77.12.31) 로 환자계획 변경 공람 공고한 영동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변경인가하고 동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를 변경 지정 하였기 공고 합니다.
2. 환지에정지 변경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본 공고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별도 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1976. 1.

서울특별시장

(환자에정지변경지정내역)

가. 사업명 : 영동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30,900평

다. 변경위치 : 강남구서초동52의2호외135필지

◎서울특별시공고제 17 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정
지 지정 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제 337 (77.12.31) 호로 환자계획 변경 공람 공고한 영동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자에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변경 인가하고 동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를 변경 지정 하였기 공고 합니다.
2. 환지 예정지 변경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본 공고 사항을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별도 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1976. 1.

서울특별시장

제 635 호

시

보

1978. 1. 19 45-43

(환지예정지 변경 지정 내역)

가. 사업명 : 영동제2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9,655.10 평

다. 변경위치 : 강남구 삼성동 산 41의
45호의 84번지

사용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

1978. 1. 27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공고제 18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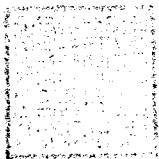
공인 신조사용 승인 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1. 사용개시일자 : 1978. 1. 30 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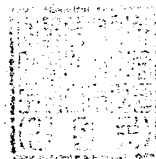
2. 인 명 : 다음

공 인 의 인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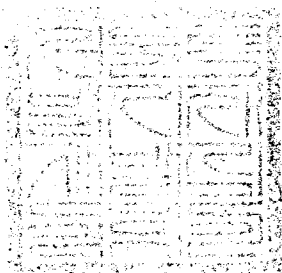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분임
도시정비국
재개발사업
수관인인
기금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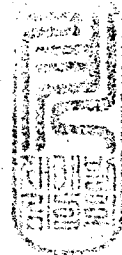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분임
도시정비국
재개발사업
수관인인
기금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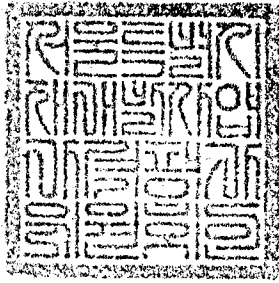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심의회의인



서울특별시
재개발사업
심의회의인



가
격
평
가
위
원
회
인
서울특별시
자연보존
사업



가
격
평
가
위
원
회
인
서울특별시
자연보존
사업



◎ 용산구 공고 제 6 호

공 인 신 조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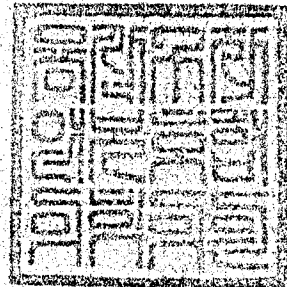
자연보호운동 추진체제 구성에 따
른 용산구 자연보호협의회 공인을
신조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 및 제 9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78. 1. 28

용 산 구 청 장

1. 공인사용년월일 : 1978. 1. 30
2. 공인의 인영 : 용산구자연보호협의
회의인

공 인 의 인 영
자 인 보 호 협 의 회 인



정

정

시보 제 633 호 (77.12.30) 에 게재된 내용중 다음과 같은 오석이
있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1978. 1.

서 울 특 별 시 장

구 분	페이지	오 류 사 항	정 정 사 항
조 례 제 1207 호	5-24	별표중 3. 인, 허가사업 (1) 자동차 운송알선 및 대여업 : 500 만원	자동 3. 좌동 (1) 자동차 운송알선 및 대여업 : 500 천원
조 례 제 1208 호	6-3	" 서울특별시 오물수거 수 수로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와 " 부칙 " 사이에	" 제 3 조중 " 별표 " 를 별 첨과 같이한다 " 을 삽입한 다.
조 례 제 1731 호	13-10	1 년단위부터 재산하여	1 년단위 복리계산하여